

## 2027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2026 파주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공고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2027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2026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19.

# 파 주 시 장

## 1 제도 개요

### □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
-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 2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 공모기간 : 2026. 2. 23.(월) ~ 4. 10.(금) 【집중공모】기간 이후 접수 건은 차년도 심의에 포함

□ 참여대상 :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2조의 ‘주민’

-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파주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시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민간단체의 구성원

□ 작성서식: (시민용)주민참여예산 주민 제안서 제출 【별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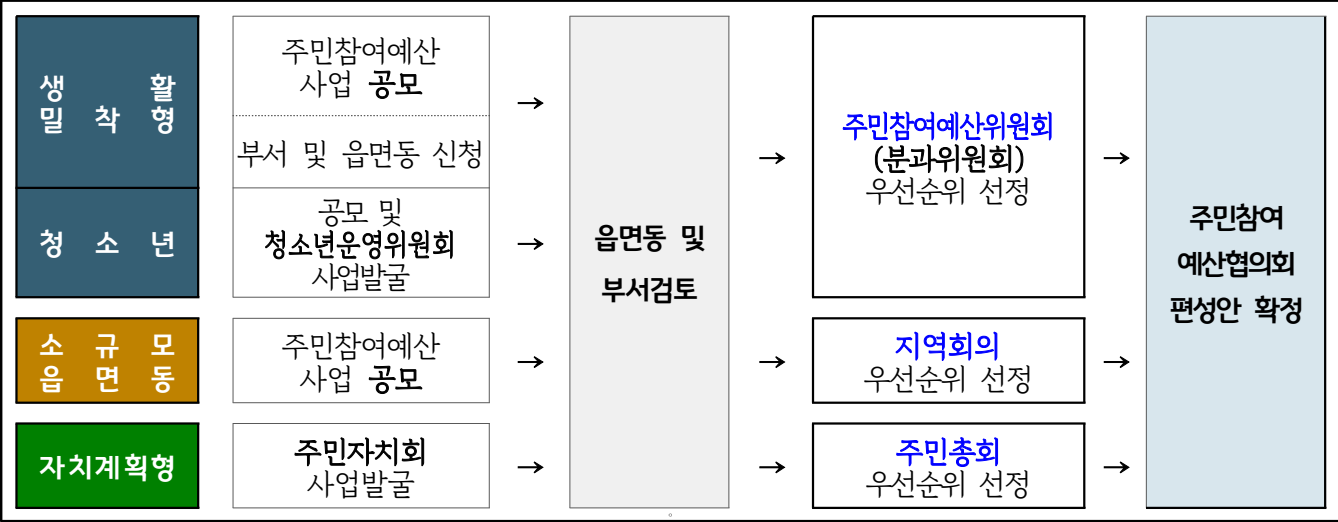
### □ 참여방법

- (온 라 인) 파주시청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에 의견등록
- (오프라인) 예산법무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우편을 통한 주민 의견 제안  
\* 단 우편 접수분은 신청기한 내 소인분까지 유효
- 신청문의 : 예산법무과(940-5984),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참여예산 담당

□ 대상사업 : 2027년 자체사업 중,

다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성 사업, 읍면동 지역 맞춤형 사업 등

### 3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추진 절차



#### ※ 제 외 사 업

제외사업은 검토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예산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업
- ☑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경상적 경비
- ☑ 사유지에 예산을 투입하거나 토지사용승낙이 불가능한 사업
- ☑ 주된 이용자가 공무원인 시설의 유지·보수비 등과 관련하여 신규 편성 또는 증액을 요청하는 사업
- ☑ 계속사업, 투자심사 및 개별위원회 심의대상 사업, 각 부서에서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 등 (예: 대규모 투자사업, 경로당미용화관 신축 및 개보수 등)
- ☑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거나 갈등소지가 있는 사업
- ☑ 특정인에 대한 특혜성, 선심성 사업, 행사성 사업
- ☑ 지방보조금으로 편성되어야하는 사업 (자치계획형- 주민자치회 실행사업 제외)
-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사항 (예: 상급기관, 교육청, 경찰서 등 타 기관소관 업무)
- ☑ 단순 민원이나 재정 소요가 없는 규제 철폐 등
- ☑ 기타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참 고

## 주민참여예산 편성유형 세부내용

### ① 생활 밀착형 주민제안 사업 (약 70억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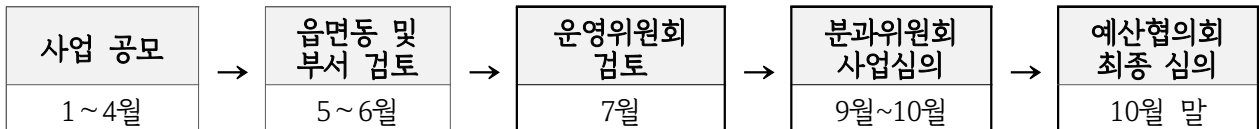
○ 대상사업

구 분	내 용
<b>① 생활밀착 유형 1</b> 읍면동장+읍면동 지역회의 발굴 사업	○ 지엽적이고, 소규모 시설비 성격의 사업에서 벗어나 지역 현안 사업 발굴 ○ 사업발굴 : 읍면동, 읍면동 지역회의, 주민* ○ 실행주체 : <b>소관부서, 읍면동</b> * 공모기간내 접수된 제안서 중, 지역 현안 사업이라고 생각 되는 경우 생활밀착 유형1으로 분류하여 심의예정
<b>② 생활밀착 유형 2</b> 주민제안+ 사업부서 연계사업	○ 이동시장실, 시민과의 대화 등 주민 직접 제안 사업 중 주민 수혜도가 높은 사업을 선별하여 제출 ○ 사업발굴 : 주민(이동시장실, 시민과의 대화 등) ○ 실행주체 : <b>소관부서, 읍면동</b> ※ 부서 및 읍면동에서 <b>직접 실행가능</b> 한 사업 제출

###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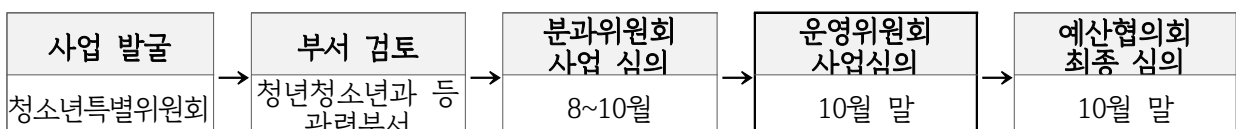
- 소규모 시설비 성격의 사업(1억원 이하)은 모두 **소규모 읍면동사업**으로 분류하여 심의예정(마을안길 및 농로 포장 사업 등)

○ 주요 추진일정(안)



### ② 청소년 제안사업 (한도액: 1억원 이내)

- 제안자 : 청소년특별위원회  
 ○ 대상사업 : 청소년관련 정책제안 사업  
 ○ 실행주체 : 실과소  
 ○ 주요 추진일정(안)



### ③ 소규모 읍면동사업 (한도액: 56억원 이내, 사업별 1억원 이하)

- 대상사업 :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 실행주체 : 해당 읍면동
- 한 도 액 : 읍·면 4억원, \* 교하동·운정4동·금촌3동 3억원, 그외 동지역 1억원  
\* 도시와 농촌이 혼합된 지역으로, 도시형 수요와 농촌형 수요의 중첩 발생을 고려하여 예산 배분
- 주요 추진일정(안)

사업 공모	→	읍면동 및 부서 검토	→	운영위원회 검토	→	지역회의 사업심의	→	필요서류* 취합·제출	→	예산협의회 최종 심의
1~4월		5~6월		7월		8월		9월		10월 말

\* 구비서류(토지사용 승낙서 등) 미비,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 등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또는 예산협의회에서 제외 가능

### ④ 자치계획형사업 (한도액: 8억원)

- 제 안 자 : 주민자치회
- 대상사업 : 주민 생활환경 개선, 마을특화사업, 주민자치활동  
- 주민자치회의 실행력 확보하여 주민참여예산 사업 다변화와 지역 문제 해결력 증대
- 실행주체  
- 주민자치회(민간경상사업보조) : 주민자치활동, 공동체 활성화, 마을특화사업  
- 해당 읍면동(시설비 등) : 주민 생활환경 개선
- 한 도 액 : 8억원

한도액		순위결정	실행	예산과목
8억	읍면동별 3천만원 이하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민간경상사업보조 <sup>1)</sup>
	+ 주민자치회 우수 읍면동 사업비 차등 지급 <sup>2)</sup> (+2억 이내)		읍면동	시설비 등

1) 지방보조금 사업의 경우 주민자치회가 직접 실행하는 사업에 한하며 예산협의회 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필요(자치협력과 취합 제출)

2) 별도 계획 수립 후 추진(자치협력과)

- 주요 추진일정(안)

